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가덕도신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9조제3항 후단”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으로 한다.

제9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을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분할납부”를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납부기
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로 한다.

제10조(「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4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
다.

제1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3회 이내로 한
다.

제7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공항시설법 시행령」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관세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로, “징수할”을 “납부할”로,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의 징수유예기한”을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으로,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기”로 한다.

제18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의 제목 “(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로, “납부기간의 연장은”을 “납부기한의 연기는”으로, “분할납부의”를 “분할 납부의”로 한다.

제19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을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

는”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로, “징수할”을 “납부할”로,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을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을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기”로 한다.

제2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
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으
로 한다.

제26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의 제목“(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계”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계”로,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한
다.

제27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29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1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
다.

제33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모자보건법 시행령」의 개정)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 절차)”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납부기한 연기 기간 중의 분할 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로, “제1항 각 호에 정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를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로, “징수유예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공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8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9조(「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1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2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3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7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7조(「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의 제목“(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

부”로, “하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침부하야”를 “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

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

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연장”을 “연기”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5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6(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2조(「어선법 시행령」의 개정) 어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에너지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0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로,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유예의 기간”을 “납부기한 연기”로, “징수유예기한”

을 “연기된 납부기한”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징수유예를 받거나”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를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기”로 한다.

제69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0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본문”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온천법 시행령」의 개정)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3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74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의5를 삭제한다.

제75조(「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7조(「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8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9조(「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로 한다.

제80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2조(「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83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
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8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를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
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81조의 제목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법 제433조제1항”으로,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
할납부”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연기나 분할 납부”로 한다.

제87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
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의3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8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9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0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1조(「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3조(「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4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5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

서를 삭제한다.

제96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8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9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0조(「전파법 시행령」의 개정)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1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철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3조(「철도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4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5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6조(「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7조(「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축산계열화사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8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9조(「축산법 시행령」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4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0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로,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를 “자는”으로,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연장은”을 “연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1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2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9의 제목“(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

수절차)”를“(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는”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로, “징수할”을 “납부할”로, “징수를 유예”를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한”을 “납부기한 연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으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징수유예”를 “납부기한의 연기”로 한다.

제114조(「항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5조(「항공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항만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호 중 “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17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9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2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연장하거나”를 “연기하거나”로,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한다.

제12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6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4조(「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 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⑤ (생 략)	제14조의2(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단서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 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제2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단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7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 ----- ----- -----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 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④ (생략)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단 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⑥ (생략)	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생략)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 -----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생략)	제48조의2(인가·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 ----- ----- ----- <u>제출해야</u> -----. ----- ----- ----- ----- -----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 전단-----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 -----.
②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②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 6개월 -----.
③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 납부---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의 허가거부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이의신청)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삭제>

<u>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④·⑤ (생략) ⑥ <u>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u><삭제></u>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	⑤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	
--	--

<삭 제>

<삭 제>

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 ----- 납부해야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납부해야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④ (생략)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단서 삭제></u> ③·④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	②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납부 기한의 연기는 ----- ----- -----.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 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 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 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 납부할 -----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 ----.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 간은 제2항의 징수유예기한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 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 납부기한의 연 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 기한----- ----- 분할 납부----- -----.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 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 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 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다.	및 제7항----- 납부기한 연기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제44조(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 ----- ----- ----- ----- . <단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징금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금융위원회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u>납부기간의 연장은</u>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u>분할납부의 횟수는</u> 3회 이내로 한다.	제4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 <u>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u> ----- <u>납부기한의 연기는</u> ----- ----- ----- <u>분할 납부의</u> -----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 ----- -----.
②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②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 -----.
③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 ~ ⑤ (생략)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단서 삭제></u>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과징금) ① ~ ③ (생략)	제25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중대한 재해·재난을 겪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 ----- ----- ----- ----- . <단서 삭제>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 <삭 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	②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

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 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르 납부기한 연기는 -----

분할 납부-----
-----.

③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납부할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

④ ----- 납부기한의 연
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
기한-----
----- 분할 납부
-----.

<삭 제>

<삭 제>

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

⑤ 제2항 -----

--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납부기한 연기 -----

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② ----- ----- ----- ----- <u>납부해야</u> -----. <u><단서 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제20조의8(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 ----- ----- ----- ----- . <단서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1조(권한의 위임) ----- ----- ----- ----- ----- <u>그렇지 않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u>법 제15조제2항</u> ----- -----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u>연장</u> 하거나 <u>분할납부하게</u> 할 경우 납부기한 <u>연장</u> 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5(<u>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u>) ----- ----- ----- <u>연기</u> 하거나 <u>분할 납부하게</u> ----- ----- <u>연기</u> 는 ----- -----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헌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 <단서 삭제>
③ · ④ (생략)	③ · ④ (헌행과 같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생략)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② ----- ----- ----- ---- <u>납부해야</u> ----- . <u><단서 삭제></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8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20일 또는 시·도지사가 20일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납부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 ----- 납 부해야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⑤ (생략)	제2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단서 삭제></u> 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5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제85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 ----- ----- ----- ----- . <단서 삭제>

일부개정령안

현행	개정안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법 제16조제2항----- ----- -----
11. · 12. (생략)	1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2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납부해야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납부기한 연기 기간 중의 분할 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총
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
기하거나 분할 납부-----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

-----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
 의 -----

--- 해당 기간 -----
-----.

④ _____

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

----- 「행
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공된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단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28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u>	⑤ ----- ----- ----- ----- ----- ----- . <단서 삭제>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u>	③ ----- ----- ----- -----, <u><단서></u> <u>삭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생략)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 ----- ----- ----- -----, <u><단서 삭제></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 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에 내야 한다.</u>	②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u><단서 삭제></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 <단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u>연장</u> 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의3(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 <u>연기</u> 는 ----- ----- -----.
②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u>분할납부</u> 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② ----- <u>분할 납부</u> ----- ----- ----- -----.
③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u>연장 또는 분할납부</u> 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u>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③ ----- ----- <u>연기 또는 분할 납부</u> ----- ----- ----- <u>해야</u> ----- . -- ----- -- <u>첨부해야</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납부기한의 <u>연장 또는 분할 납부</u> 를 신청하는 사유	6. ----- <u>연기 또는 분할 납부</u> -----
④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u>연장</u> , 제2항에 따른 <u>분할납부</u> 및 제3항에 따른 서식에 관한 세부	④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u>담보</u> 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8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8조의6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해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2. 「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낼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생략)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 연기----- ----- 분할 납부----- . <후단 삭제>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

3. <u>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4. <u>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u> 5. <u>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u> 6.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⑤ <u>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u> ⑥ <u>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u>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삭 제>		<u>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u> 1. <u>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u> 2. <u>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u> 3. <u>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u>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 제4항----- ----- ----- ----- -----.
---	--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 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u>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u> <u>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u> <u>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u> <u>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u> <u>한다.</u>	② ----- ----- ----- ----- <u><단서</u> <u>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생략)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 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 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u> <u>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u> <u>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u> <u>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u> <u>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u>	③ ----- ----- ----- ----- <u><단서 삭제></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수산물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② (생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 ----- ----- -----.
④ (생략)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생략)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 ----- -----.
④·⑤ (생략)	<단서 삭제> ④·⑤ (현행과 같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생략)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u>납부</u> 해야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생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 ----- -----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 ③ (생략)	제21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도 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 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④ ----- ----- ----- <u>납부해야</u> -----. <u><단서 삭제></u>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8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 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26조의5(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 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u>	② ----- ----- ----- ----- ----- <u><단서 삭제></u>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①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	제35조의6(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11.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2. ~ 14.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① ----- ----- 포함되어야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 ----- 12.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	제11조(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법 제9조제1항 ----- ----- 제출해야 ----- -----. ----- ----- ----- ----- -----

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 -----. ③ (현행과 같음)
---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35조(과징금) ①·② (헌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 ----- ----- -----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헌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생략)	제28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지받은 해 9월 30일까지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 ----- ----- ----- . <단서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납부</u> 해야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또는

⑤ 제2항 -----

--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생략)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전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 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 금을 <u>납부하여야</u> 한다. 다만, 천 <u>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u> <u>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u> <u>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u> <u>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u> <u>납부하여야</u> 한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납부해야</u> ----- . <단서 <u>삭제</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연기는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②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 ----- -----.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상황 등 사정 변화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의3(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삭제>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된 담

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 (생략)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단서 삭제></u> ③ (현행과 같음)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 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u>납부해야</u>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생략)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 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 ----- ----- ----- <u>납부</u> <u>해야</u> -----. <단서 삭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 연기는 -----.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② ----- 분할 납부-----.
③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4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① (생략)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u> 한다. <u>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② ----- ----- ----- ----- ----- ----- <u>납부하</u> <u>야</u>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u> 하여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납부</u> <u>해야</u>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④ (생략)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생략)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 -----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 <단 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1조(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①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1조(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① 법 제433조제1항----- ----- --- 연기는 ----- ----- --.
② 법 제4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33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 ---- 연기나 분할 납부-----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④ (생략)	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단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35조의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④ (생략)	----- <u><단서 삭제></u> ④ (현행과 같음)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28조의4(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u>납부해야</u> -----. <u><단서 삭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장래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 <u>납부해야</u>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 <u><단서 삭제></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5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 ----- ----- ----- ----- . <단서 삭제>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단서 삭제>

<u>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 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 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 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납부해야 -----, <단 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u>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납부해야</u> ----- . <u><단서 삭제></u> ③ (현행과 같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10조(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 <u>납부</u> <u>해야</u>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생략)	제37조(과징금 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생략)	제12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생략)	제10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철도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생략)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 -----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	제6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해야 하고,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삭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②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경우에는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단서 삭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삭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②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 자는 -----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기 ----- -----.

③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연기는 -----.

④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 외의 부분 단서-----

-----.

<삭 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⑤ (생략)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 <삭 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	②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 부과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다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 연기는 -----
분할 납부-----

③ -----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 납부할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 -----.

④ ----- 납부기한 연기는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
----- 분할 납부-----.

<삭 제>

<삭 제>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유예 및 분

⑤ 제2항-----

--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납부기한의 연기

할납부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삭제>

1.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경 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 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 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 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 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 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 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 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 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납부의무자가 과징 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 제22조제2항</u>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까지를 말한다.	④ <u>법 제23조제4항</u> ----- ----- ----- -----.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해양수산 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의 관할 구역에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의2(권한의 위임) ----- ----- ----- ----- -----.
1.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변경을 포함하 다)의 <u>승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보예의 고 시</u> <u><신 설></u>	1. ----- ----- ----- <u>승인</u> ----- ----- ----- 1의2. <u>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제대상 인·허가에 관한 협의기간)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삭 제>
제40조(취수과징금) ①·② (생략)	제40조(취수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25조(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8조(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 <u><단서 삭제></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② ----- ----- -----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 ③ (생략)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 ----- 연기하거나 ----- ----- 분할 납부----- . <후단 삭제>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삭 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
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
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
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 제4항-----

----- 연기 및 분
할 납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1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22조의1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단서 삭제></u>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u> <u>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u> <u>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u> <u>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u> <u>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단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연락처	(044) 200 - 6743